

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[안]

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한 아래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4일
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

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인)		자격·경력 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주소			
노*희 (1979)	세종특별자치시 (이하 생략)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장*숙 (1970)	대전광역시 (이하 생략)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
2. 법적근거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8

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국가기술자격법 행정처분 담당(☎ 042-670-32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